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등 로봇안전 규제현황 및 이해

---

2021. 10.

# 산업안전보건 분야 규제 방향

---

# 산업현장에서의 실효적인 안전·보건 체계 확립

<p><b>국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 1. 15. 전부개정 / 2021. 1. 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 2019. 1. 15.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을 통해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기 시작하였음</li> <li>⇒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계획의 수립 및 성실한 이행의무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주식회사 등의 대표회사는 ‘안전보건계획’ 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을 의무가 있음</li> </ul> </li> </ul>
<p><b>정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 설치(2021. 6.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 산재사고 예방기능 확충 및 현장 관리를 강화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li> </ul> </li> </ul>
<p><b>법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형 기준 상향(2021. 7. 1.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대법원의 건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범죄에 대하여 양형 기준을 상향하였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치사’에 대하여 양형 기준을 상향하였음</li> </ul> </li> </ul>

# 안전보건계획의 수립 및 성실한 이행 의무 부과

##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안전보건계획의 수립 및 성실한 이행 의무 부과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 안전보건계획의 수립 및 성실한 이행 의무 부과

##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 조직구성·인원 관련

### ○ (조직구성) 안전·보건관리 조직구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1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2 조직을 구성하는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야 합니다.
- 3 생산라인과 직결된 조직이어야 합니다.
- 4 조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경영체제 내에서 통상의 관리책임과 권한은, 상급자는 차 하급자에게 자신의 직무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그 직무에 대한 책임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

### ○ (조직인원) 안전·보건관리조직 인원구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1 회사에서 사용되는 기술 및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 2 안전보건관리자는 능력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 3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안전보건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4 안전보건상의 책임(공동장비, 작업장소 및 인원관리)지정과 업무분장을 해야 합니다.
- 5 문제점을 지적·보완할 수 있는 관리자를 조직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 (조직역할) 안전·보건방침 및 효율적 안전·보건관리 역할수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1 안전보건조직에서 수행하는 산재예방활동에 적극 협력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2 안전보건관리부서는 적절한 관리통제능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3 안전보건조직은 다른 부서 및 현장 생산조직과 기능·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현장근로자의 고충사항·개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4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책임자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 5 조직 내의 위험요소들을 이해하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적 요소를 고려한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6 사고발생 시에는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유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7 관리감독자는 적극적으로 안전보건상의 문제를 찾아 사고 발생 전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계획의 수립 및 성실한 이행 의무 부과

##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 조직구성·인원 관련

### ○(안전보건 예산) 회사의 안전보건 예산 반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필요한 비용 등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평가 필요

- 1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 3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 4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 5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 6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 7 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
- 8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 비용
- 9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등 지원

### ○(안전보건 시설) 회사의 안전보건 시설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1 안전보건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 2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시설 및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3 유해화학물질취급의 안전시설은 화학물질의 유출·누출 감시장치 및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4 추락방지시설, 국소배기장치, 소음방지시설, 가스검지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5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산업용 로봇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율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	○ 고시·예규·훈령·지침의 형식으로 해당 주제와 관련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로서 「안전검사 고시」,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가 있음



# 산업용 로봇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율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용 로봇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율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용 로봇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율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교시 등)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에 대하여 교시(敎示) 등[매니퓰레이터(manipulator)의 작동순서, 위치·속도의 설정·변경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구동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용 로봇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율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킬 것
  - 가.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 나.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 다.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 라.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 마.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 바.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를 감시하는 사람은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 등에 작업 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그 스위치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산업용 로봇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율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제222조에 따른 교시 등을 위한 로봇의 운전과 제224조 단서에 따른 로봇의 운전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용 로봇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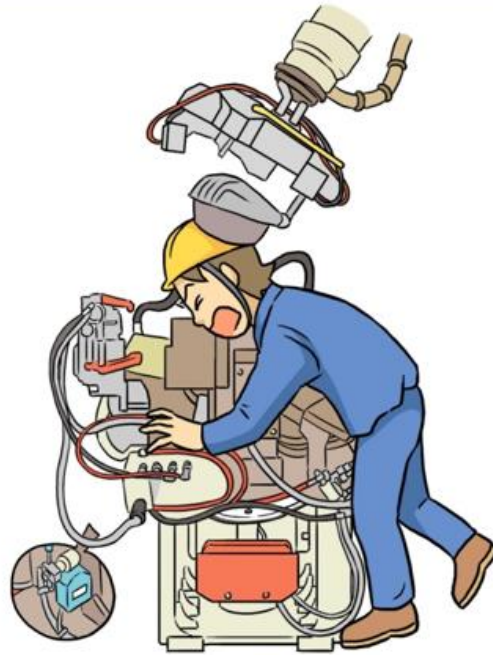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사업주는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검사·조정(교시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청소·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운전 중에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로서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22조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한 사례 예시

## 사례6. 용접 고정구의 리미트 스위치를 복구시키자, 운반로봇이 자동 운전되어 끼임, 사망

자동차용 배기장치(Muffler) 생산공정에서 자동용접로봇을 이용한 배기장치 생산 중 용접로봇의 용접불티(spatter)가 고정구(固定具, jig)의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에 고착되어 용접로봇이 정지됨. 이를 조치하기 위해 로봇 가동범위 내에서 리미트 스위치에 고착된 용접불티를 제거하여 리미트 스위치가 복귀되자 이 신호를 받은 운반로봇이 자동운전되어 고정구와 로봇 사이에 피재자의 안면부가 끼인 재해임



#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한 사례 예시

사례6. 용접 고정구의 리미트 스위치를 복구시키자, 운반로봇이 자동 운전되어 끼임, 사망

## 1 재해발생 원인

### ✓ 로봇의 재가동 시 조치 미흡

- 이상이 발견되어 로봇이 자동으로 운전 정지 된 후 이를 재가동 할 때에는 사람이 재가동 조작을 하지 않으면 운전을 개시하지 않는 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리미트스위치만 복귀되면 자동으로 로봇이 동작되는 구조로 설치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교시 등))

### ✓ 로봇과의 접촉방지 조치 미흡

- 연동장치(interlock)가 설치된 출입구 이외의 장소로부터 근로자가 로봇의 가동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없도록 안전방책을 설치하여야 하나, 고정구 옆에 약 55cm 정도의 출입가능한 공간이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운전 중 위험방지))



#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한 사례 예시

사례6. 용접 고정구의 리미트 스위치를 복구시키자, 운반로봇이 자동 운전되어 끼임, 사망

## 2 예방대책

### ✓ 재가동시 조치 철처

- 비상 정지장치 또는 로봇의 이상이 발견되어 자동으로 운전이 정지된 경우 근로자가 로봇 가동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 재기동을 조작하여야 운전이 개시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 로봇의 가동범위내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설치

- 연동장치(interlock)가 설치된 출입구 이외의 장소로부터 근로자가 로봇의 가동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없도록 안전방책을 설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처벌 적용 법령 - 기본형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처벌 적용 법령 - 기본형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처벌 적용 법령 - 기본형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처벌 사례 - 기본형

## 서울동부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19고정119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주식회사
검 사	허정(기소), 박예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추승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2. 19.

###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서울 강동구 C, D에서 시공하는 'C, D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고, 위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 피고인 A(현장소장), 피고인 B(주식회사)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된 사건
-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으로 검사의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
- 이에 불복하는 피고인들은 고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처벌 사례 - 기본형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동구 E빌딩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26억 원에 자재 발주하여 2019. 2. 14.부터 2020. 1. 31.까지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5.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시 별지 별표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개선조치 결과 제출, 확인결과보고서

1. 법인등기부 등본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 관할 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의 지위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문절차를 진행
- 통상적으로 피의자 신문절차 전 현장감독 등 행정조사 절차를 사전에 거치게 됨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처벌 사례 - 기본형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은 \_\_\_\_\_

-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2,3항이 적용됨
- 법 위반 행위자는 ‘자연인’이므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짐과 동시에 행위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됨 ⇨ 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처벌 사례 - 기본형

<붙임>

[ 범 죄 일 랑 표 ]

연 번	안전상의 조치내용	위반내용	위반법령
1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6층 사이 계단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0조)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계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층 이동식 들보계 작업발판 단부 안전 난간 미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3조제1항)

- ‘범죄일람표’란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여러 개일 경우 이를 목록으로 작성한 표를 의미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는 매우 추상적이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체적인 행위를 적시하여 범죄일람표를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처벌 적용 법령 - 사고발생형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처벌 적용 법령 - 사고발생형

##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처벌 사례 - 사고발생형

## 제 주 지 방 법 원

### 판 결

사 건 2018고단977 가. 업무상과실치사  
 2018고단1248(병합)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8고단1563(병합) 다. 근로기준법위반  
 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라. A  
 2.가. B  
 3.나.다. 주식회사 C

검 사 정광병(기소), 박금빛(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프로(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창한

판 결 선 고 2019. 1. 28.

### 주 문

####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 2. 피고인 B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 이 유

#### 범 죄 사 실

『2018고단977』

피고인 A은 제주시 AJ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공장장으로서 근로자들의 배치, 생산 업무 등 공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처벌 사례 - 사고발생형

장 운영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생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1. 피해자 AK 사망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주)C은 제주도교육청의 '2017년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계획'에 따라 2017. 7. 11.경 현장실습생인 피해자 AK(17세), 피해자가 다니는 AL고등학교장 AM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부터 위 회사 제1공장에서 '팔렛타이저(라벨공정 이후 컨베이어에서 이동되는 소포장된 생수들을 대규모로 포장한 뒤 팔레트 위에 싣는 자동적재기,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함) 조작, 관리 및 이 사건 기계에 의해 포장된 생수들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창고 등으로 옮기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 사건 기계는 유압 등에 의하여 포장된 생수를 리프트를 이용하여 대규모로 6단까지 쌓아 올리는 자동화기계로서 오작동의 우려 및 정비 중 갑작스런 가동의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기계 주변에 출입을 금지하는 방책 등을 설치하여 기계 작동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의 작동방법, 안전수칙 등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시킨 뒤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현장실습생의 경우 현장실습을 지도할 담당자와 함께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기계가 오작동하거나 오류로 인해 멈춰 정비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해 잘 아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한 뒤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계 주변에 방책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

해자와 같은 실습생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아니한 채 오로지 선임 근로자들로부터 구두로 배우는 이른바 '도제식 교육'에 의존한 상태에서 그러한 도제식 교육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 실습생에 불과한 피해자 홀로 이 사건 기계를 조작, 관리하게 하였으며, 오류 등으로 이 사건 기계가 멈춘 경우 간단한 정비 등은 작업지휘자 없이 피해자가 혼자 직접 조치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2017. 11. 9. 14:00경 포장된 생수를 실게 될 팔레트의 위치 불량으로 인해 이 사건 기계가 정지하게 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 사건 기계 내부로 들어간 피해자 위로 리프트가 갑자기 하강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면서 피해자의 목이 위 하강한 리프트와 고정된 테이블 사이에 끼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19. 09:01경 제주도 AN에 있는 AO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 뇌손상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 제품창고에 보행자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처벌 사례 - 사고발생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1공장에 경보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유압,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 램, 리프트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 제품적재기 등 5곳에 방책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 적재기 포장공정 등 2곳에 통로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 야드 경계석 주변 개구부 등 9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사.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 랩핑기 상하구동부등 7곳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 핸드라벨러 컨베이어 등 4곳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 포장박스 컨베이어에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업주는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메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 회사 사업장 산업용 로봇 출입문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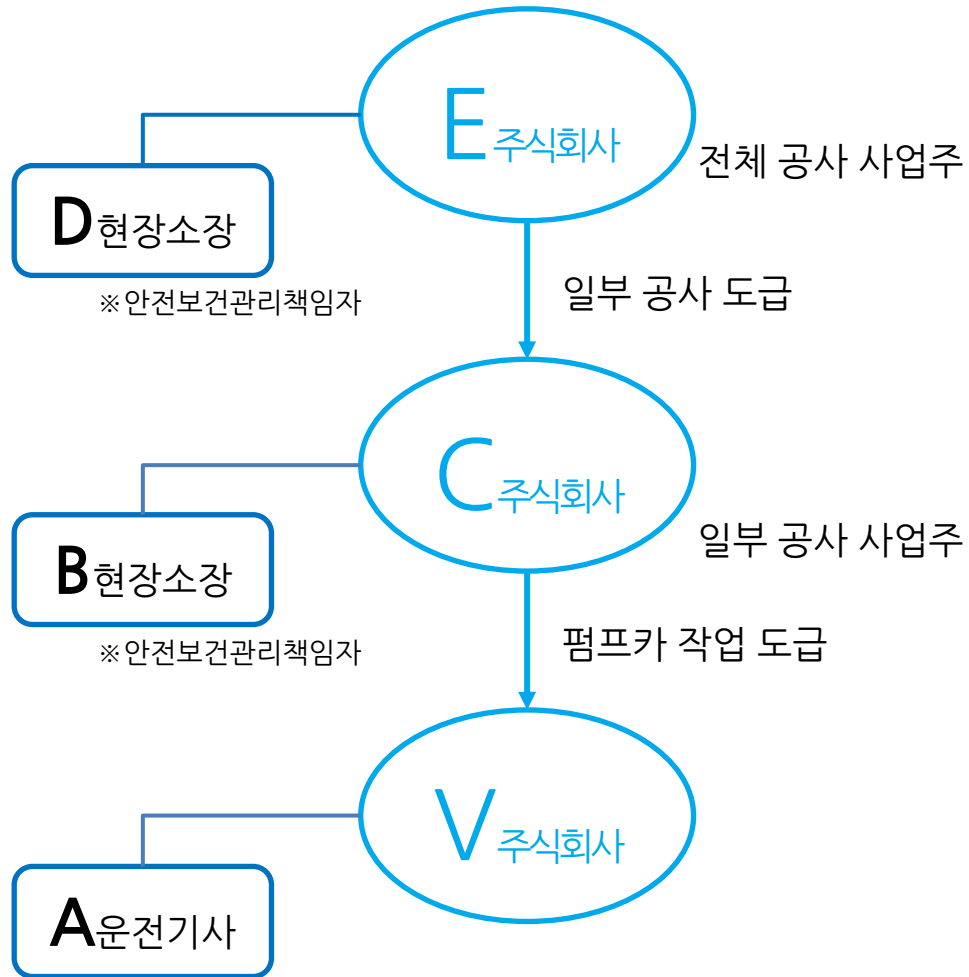
카. 사업주는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처벌 사례 - 사고발생형

##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장에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산업실습생으로 일을 하다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전에 철저한 안전 관리를 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본건은 피고인들의 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죄책을 오롯이 피고인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도리를 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처벌 사례 - 사고발생형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처벌 사례 - 사고발생형

## 울 산 지 방 법 원

### 판 결

사 건	2017고단4559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3.나. C 주식회사 4.가.나. D 5.나. E 주식회사	
김 사	박상용(기소), 정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창모(피고인 B,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8. 10. 11.	

###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각 무죄.

### 이 유

#### 범 죄 사 실

##### 1. 피고인들의 관계

E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F에서 'G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D는 E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E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일부인 '해상공사II'를 C 주식회사에 도급하였는바, C 주식회사는 위 '해상공사II'를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해상공사II'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위 '해상공사II'의 J형 측구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 H 콘크리트 펌프카의 운전기사로서 콘크리트를 콘크리트 믹서 트럭에서부터 거푸집으로 운반해주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8. 07: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위 해상공사II의 J형 측구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서 H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하여 1 15톤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콘크리트를 J형 측구 거푸집으로 옮겨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처벌 사례 - 사고발생형

다.

당시 피고인은 15:40경 작업을 하고 약 1시간 20분의 대기시간 후인 17:00경 작업을 재개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작업 간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콘크리트 경화현상 및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콘크리트 펌프카의 호스에 과도한 압력이 형성되어 호스가 요동·선회 등을 일으켜 다른 작업자를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 호스에 압력이 과도하게 형성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타설 작업 재개 전에는 호스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8. 17:00경 위 J형 측구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콘크리트를 거푸집으로 옮기는 작업을 재개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호스가 압력으로 인하여 '땡' 소리가 나면서 요동·선회하다가 그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J(65세)의 복부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약 2.5미터 높이의 거푸집에서 추락하여 2017. 6. 9. 09:15경 K병원에서 폐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3. 피고인 B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 관련 사망 재해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17. 6. 9. 10:00경 그 재해 발생 현장에 대하여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L 등에게 지시하여, 그 거푸집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사이에 있던 개구부에 각목을 설치하는 등 개구부를 막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하였

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L, Q, B, D,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 M,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회피회보, 감정결과회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L의 고용노동청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 사망 직후인 사고 발생 다음날 오전 10:02경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L에게 전화를 걸어 거푸집 작업발판과 난간대 사이 개구부에 각목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L은 그 즉시 직원인 U에게 전화로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각목을 설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위 시기는 근로감독관의 재해사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둘러 각목 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처벌 사례 - 사고발생형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 2. 판단

### 가. 피고인 B, D에 대한 공소사실

####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피고인들의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적시하는 내용은 ①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 미설치, ② 개구부 각목 미설치, ③ 콘크리트 타설 시 엔드호스가 아닌 도킹호스를 사용한 점, ④ 작업방법에 대한 계획서 미작성 등임을 알 수 있다.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각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진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안전난간

이 사건 중대재해를 조사한 근로감독관인 증인 S, T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규칙이 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난간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나) 안전방망

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안전난간을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와 별도로 안전방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다) 개구부 각목

규칙 제13조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하여, 규칙 제56조는 작업발판의 구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각 규칙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안전난간의 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이 15cm가량 되어 작업자의 발이 빠질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규칙에 그 간격의 한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위 개구부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그곳을 각목 등으로 막지 아니한 것이 규칙이 정한 안전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라) 엔드호스를 사용하지 않은 점

규칙이 정한 안전조치의 내용으로 콘크리트 타설 시 호스 끝부분에 엔드호스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도킹호스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처벌 사례 - 사고발생형

타설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이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마) 작업계획서 미작성

규칙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4에 따르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에는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차량계건설기계작업 작업계획서(증거기록 2권 114쪽 이하)에 따르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운행경로의 경우 사진을 이용하여 설명) 작업계획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위 작업계획서에 '콘크리트 작업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한 관리사항, 타설 전 펌프카의 배관상태 등에 대한 확인 등 작업방법'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안전조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작업계획서 작업방법란에 모든 예상 가능한 세부적인 위험요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규칙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2)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규칙이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사망 사고가 A의 펌프카 조작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검사는 피고인들이 A으로 하여금 엔드호스가 아닌 도킹호스를 사용하도록 하고, 콘크리트 작업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한 관리사항, 타설 전 펌프카의 배관상태 등에 대한 확인 등 작업방법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A에

게 주지시키지 않는 등 A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검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를 이용하여 믹서 트럭의 콘크리트를 거푸집으로 옮기는 펌프카 조작은 C 주식회사와 V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인 V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A이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A은 피고인들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펌프카 작업을 의뢰받은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펌프카를 조작하게 된 것이고, 그 작업은 A이 자신의 업무로서 그 책임으로 하는 것이며,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B나 피고인 D가 펌프카 조작의 방법과 관련하여 A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A에게 이 사건 펌프카 조작에 있어 작업의 방법과 순서를 정하여 알려 주거나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강구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다른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B, D의 법 위반을 전제로 성립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처벌 적용 법령 - 사고발생형

##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

---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처벌대상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보호대상	종사자 및 이용자	근로자
형사처벌대상	개인사업자(사업주), 경영책임자등 법인	행위자 법인(사업주)
제3자로부터 노무제공유형	도급, 위탁, 용역	도급
처벌 형량 (사망사고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중대재해로 입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없음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과

##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과 - 시행령(안) 요약

## 법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 사업·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
- 법정 인원 이상의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인력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매년 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관리하는 체계 마련할 것
-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은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 반기별 1회 이상 종사자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조치 할 것
-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구호조치 등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별 1회 이상 확인·점검할 것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도급, 용역, 위탁 받는 자의 재해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 안전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것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과 - 시행령(안) 요약

## 법제4조 제1항 제4호 관련

- 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말함
-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을 것(지정 전문기관 위탁 가능)
-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 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조치를 할 것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치를 할 것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과

##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과

##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과

##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재해발생시 형사처벌

##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재해발생시 형사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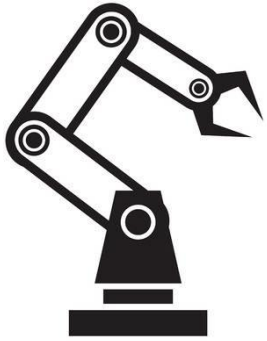
##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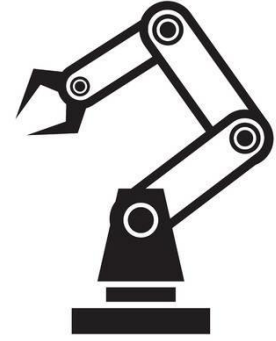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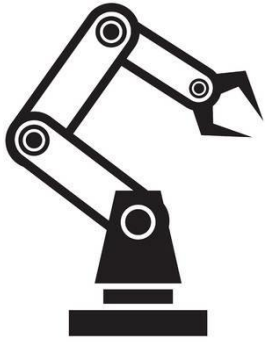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Q&A





감사합니다.

Robot System Safety

